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안내문

#with\_you



# 성폭력이란?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안내문

##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참고)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일컫습니다.

성희롱, 성추행에서  
윤간, 강간까지 성과 관련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성폭력의 성립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폭력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이 성립합니다.”

- 성폭력 규정 및 처벌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합니다.

## 예시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하는 성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 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간담회 자리 등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인터넷, 카톡, 밴드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안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안내문

## ■ 동료로서의 태도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수평적 관계, 즉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대우합니다.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음담패설을 삼가 합니다.
-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합니다.
-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 합니다. 공연을 위해 통상적 신체접촉을 넘어선 신체접촉이 필요한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간담회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연습 중이나 분장실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습니다.
- 칭찬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합니다.
- 후배를 딸 같다, 아들 같다 하며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구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일단 프로덕션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그 행동을 즉각 중지시켜야 합니다.
-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듯한 질문보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끊습니다.
- 성희롱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건강한 문화를 위한 소중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 훌륭한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 내가 속한 조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합니다.

## ■ 평상시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하고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성희롱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성희롱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 사건이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성희롱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성희롱을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 피해사실을 알린 구성원의 용기와 해결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 성폭력 신고 시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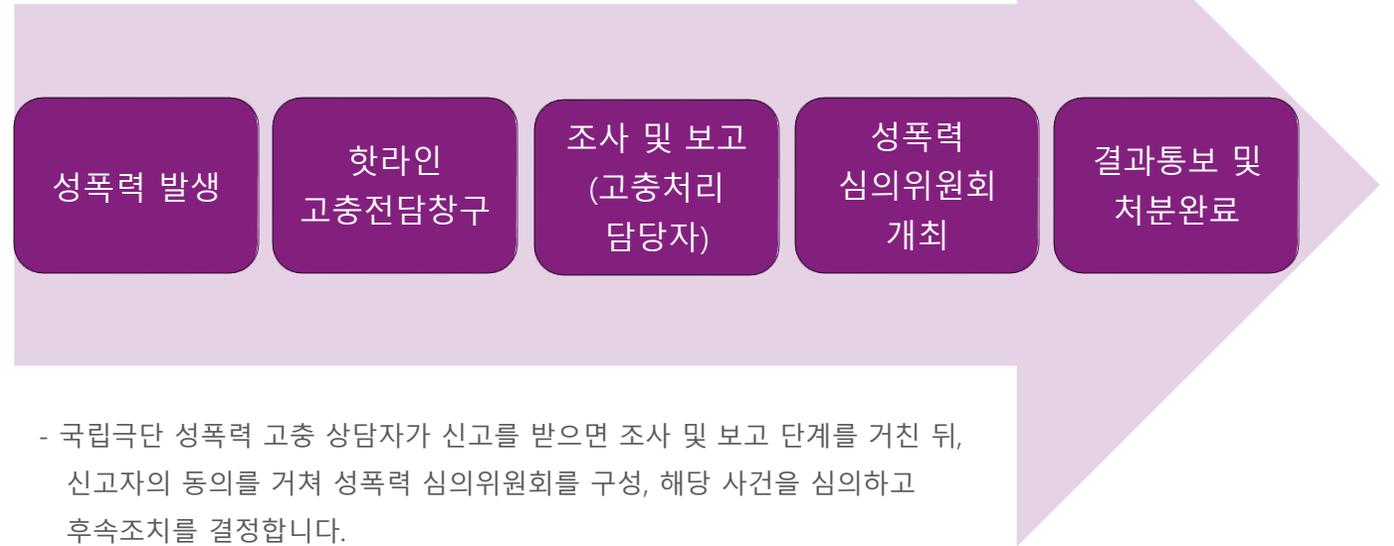
## 성폭력 발생 시

- 성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목격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립극단 성폭력 고충상담자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연락합니다.
  - **국립극단 성폭력 고충상담자**
    - 김정연 (02-3279-2255)
    - 음창인 (02-3279-2234)
  - 국립극단 성폭력신고 핫라인
    - [hearne@ntck.or.kr](mailto:hearne@ntck.or.kr)
- ※ 담당 프로듀서 및 제작진행에게 대신 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극단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가해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단, 상기 조치 시 신고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고충상담원 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해 누설하지 않습니다.

## 신고 시 국립극단 처리 절차



## 외부 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번 없이 1331	hosoo@nhrc.go.kr
여성긴급상담전화	국번 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서울 해바라기센터	02-3672-0365	help@help0365.or.kr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 피해자 지원대책 확대

- 가해자 무관용원칙 확대
  - 주취감경 (술에 취했을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 감소) 적용 없음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조항 추가
-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폐지
- 공소시효 배제범위 확대 (아동, 청소년 대상)
- 피해자 지원강화 및 피해대상범위 확대 (남성 포함, 유사강간 포함)
- 국선변호사 지원-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대리 진술)

## 신고 시 참고사항

- 가해자에게 의사표현을 명확히 합니다.
  - 현장에서 말하지 못할 경우 문자, 이메일, 우편(등기우편)으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 성폭력 발생 이후 가해자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 ⇒ 이후 성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리되지 않은 내용의 SNS 게재가 무고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몸에 상처나 멍이 생긴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합니다.
- 응급신고(1366) 시 몸을 씻지 않고 입은 옷 그대로 담당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물품(가해자 메모, 체액, 흥기 등)을 보관하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 사건 신고 후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하므로 기억이 재구성되지 않도록 사건발생경위를 기록해둡니다.

# #with\_you

